「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

- 지자체용 -

2021.2.

질병관리청

Contents

Ⅰ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 1

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 9

1. 이용자 이용 절차(네이버, PASS, 카카오톡) ····· 9
① 네이버 ····· 9
② PASS ····· 13
③ 카카오톡 ····· 15
2.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 18

Ⅲ 주요 질의 응답(Q&A) ····· 28

1. 일반사항 ····· 28
2. 이용자 ····· 35
3. 시설관리자 ····· 39
4. 지자체 담당자 ····· 48

Ⅳ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지자체) ····· 51

Ⅴ 홍보자료 ····· 59

I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1. 전자출입명부(KI-Pass)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手記)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
  -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칭함

2. 도입 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발견

  *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제한명령'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 ('20.3.22)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0% (2,032명)만 유선 통화 가능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및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20.6.10~)

3. 법적 근거

- 전자출입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음
-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5.8. 시행한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작성 제도가 도입됨

4. 사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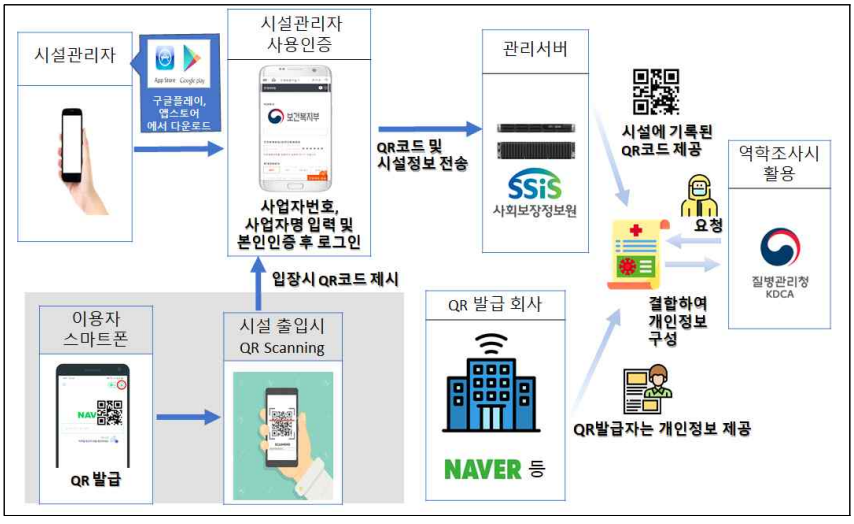

I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1.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코드발급회사(네이버, 카카오톡, PASS)를 통해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 QR코드발급 관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성이 높은 네이버 (6.10.~), PASS(6.24.~), 카카오톡(7.1.~)에서 발급 가능

2.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 기록*을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3. **(QR코드발급회사)** 기존 앱(네이버, 카카오톡, PASS)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상용 앱 운용회사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 가능

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정보*(QR코드 인식 기록)를 서버 내 저장·관리

   *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음

5.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QR코드발급회사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QR코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정보(시설정보, 방문시각, QR코드)를 각각 요청 ➡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접촉자 추적 등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

   * (활용 예시)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에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통하여 접촉자 명단 파악 가능

※ [참고] 전자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 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수집 → ②분산 보관·관리 → ③4주 후 자동 파기
  * (QR코드발급회사) 이름, 연락처, 발급 시각, QR코드 등의 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 정보, 방문 시각, QR코드 등의 정보
- **(정보보관)** 평상시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서, '방문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조회요청에 따라 결합
- **(파기)** 코로나19 잠복기(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 파기

5. 적용 대상

- 다중이용시설 중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①마스크 착용, ②주기적 소독·환기, ③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바, 아래 대상(시설, 활동, 장소 등)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 필요

구분	대상	비고
중점관리시설 (11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 **※수기명부 작성불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파티룸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
일반관리시설 (16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스포츠 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전자출입명부 **우선적 설치·이용 권고**
기타	▲집합·모임·행사 개최 장소·시설**	전자출입명부 **우선적 설치·이용 권고**
	▲종교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허용 활동 종류 및 인원 제한
*** 해당 시설 이용자도 전자출입명부 인증 및 이용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4, 5185('21.2.15.)호 '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기준(적용기간: '21.2.15~2.28)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시설 구분(중점 vs 일반), 적용 지역(예, 수도권 vs 비수도권) 및 대상시설 추가 지정/조정 등 변경 가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지자체에서 집합제한 명령 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토록 한 시설 (일회성 행사도 가능함)

※ 의무적용 예외

①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 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본인명의 휴대폰 연락처)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에 한정하며,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출입일시, 성명, 연락처)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 자체 전자출입명부 사용

②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예시) 정기 출입기간 및 출입자가 특정되어 있고 방역 관리가 철저한 시설, 영세한 업장의 시설관리자가 고령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 전자출입명부 사용 제외(단, 수기명부는 사용)

- 적용 기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감염병 위기단계 총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있음

6.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신분증 대조 필수) [서식 1]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함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 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7.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중 출입자 명부 부실 관리에 대한 조치 절차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미비치,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5. 적용 대상'(4쪽) 참고

❶ (중대본)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등

❷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❸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❹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도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 또는 10만원 이하(이용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사항 안내'에 따라 지자체에서 대상·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 해당 조치 실시

[서식 1] 수기명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 시설관리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시설명)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수기명부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기명부 양식) 이용자는 아래 양식만 작성

* 신분증 대조 필수(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 필요)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비고
6.24	17:24	√	관악구	000-0000-0000	
2.19	16:30	√	은평구	12가34나	

1 이용자 이용 절차

-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다음 세 가지 ① 네이버 모바일 앱, ② PASS(통신사 본인인증 앱), ③ 카카오톡 중 원하는 앱을 통해 QR코드 발급

① QR코드 발급방법 – 네이버 모바일 앱

[가. QR코드 발행 진입 경로]

① 네이버 홈(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메인에서 QR체크인 선택

* 사전로그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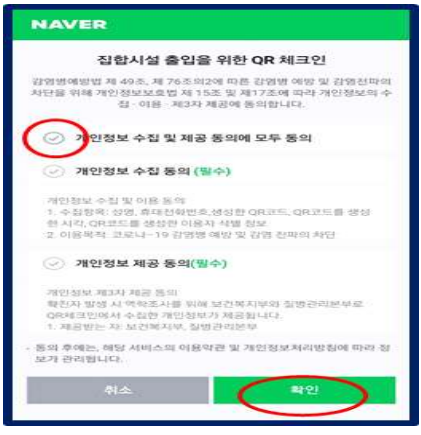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할 경우 동의 및 확인 선택

③-1 휴대전화 SMS 인증창이 나오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 진행(최초 1회, PASS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함)

[사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③-2 별도 **보호자 동의**가 필수 (최초 1회만 동의)

④-1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행 완료

/개인안심번호 발행 완료

[QR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좌측 QR코드 유효시간 초과 안내 화면이 나옴]
(2회까지 자동 재생성)

④-2 **재시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

[나. 최초 QR코드 발행(동의) 이후 QR코드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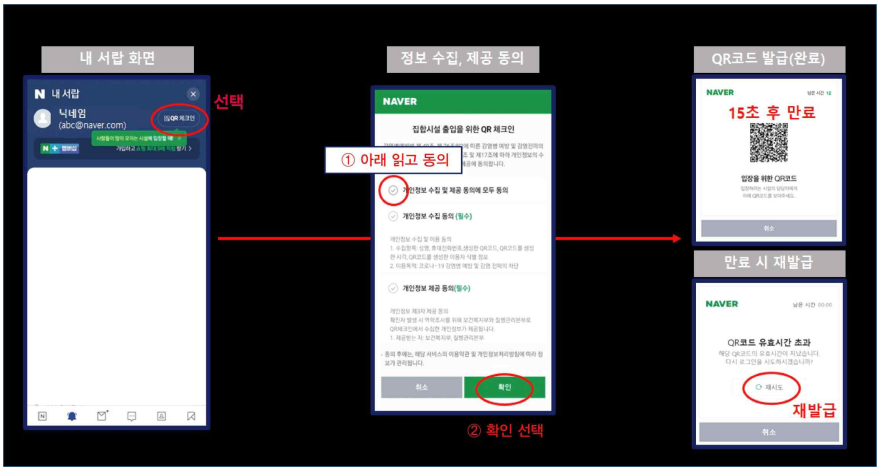

※ 쉬운 방법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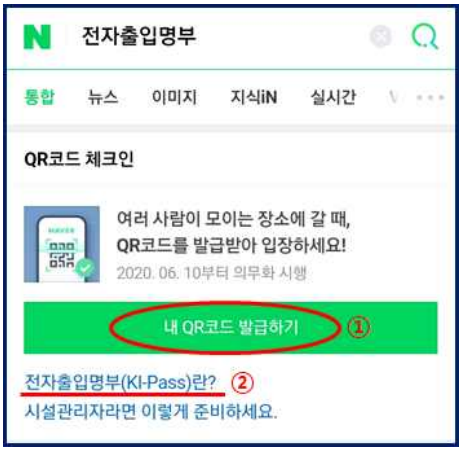

네이버에서 “전자출입명부”를 검색(스마트폰에서만 가능)
① “내 QR코드 발급하기” : 바로 QR코드 발급화면으로 이동
② “전자출입명부(KI-Pass)란?” : 안내 페이지 이동
(포스터, 리플렛 다운로드 가능)

❷ QR코드 발급방법 – PASS 앱(통신사 본인 확인 앱)

※ 통신사(SKT, KT, LG)에 따라 화면이 일부 다를 수 있음

[가. QR코드 발행 진입 경로]

① PASS 앱 실행 이후,
로그인(PIN번호, 지문, 홍채 등)

② QR출입증 선택
(사전 로그인 필요)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할 경우 동의 후 QR생성 선택

④-1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행 완료

/개인안심번호 발행 완료

[QR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동 화면이 나옴]

④-2 재생성 또는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

❸ QR코드 발급방법 _ 카카오톡

[가. QR코드 발행 진입 경로]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

① 하단의 왼쪽 세 번째 버튼인 '#탭' 선택
② 상단의 왼쪽 첫 번째 버튼인 '코로나19' 선택
③ 화면 중간의 'QR코드체크인'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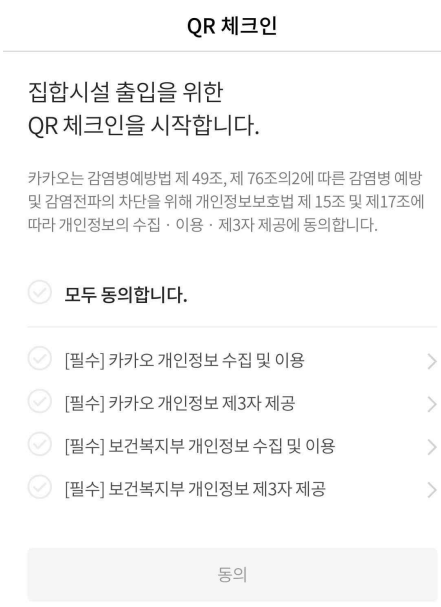

④ 본인인증 또는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 (최초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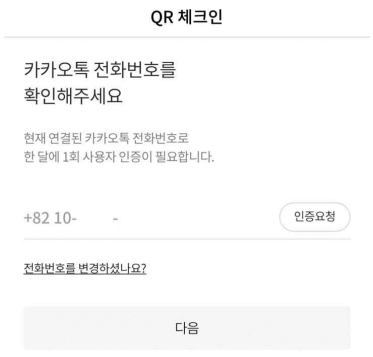

⑤ 필요 정보 입력 후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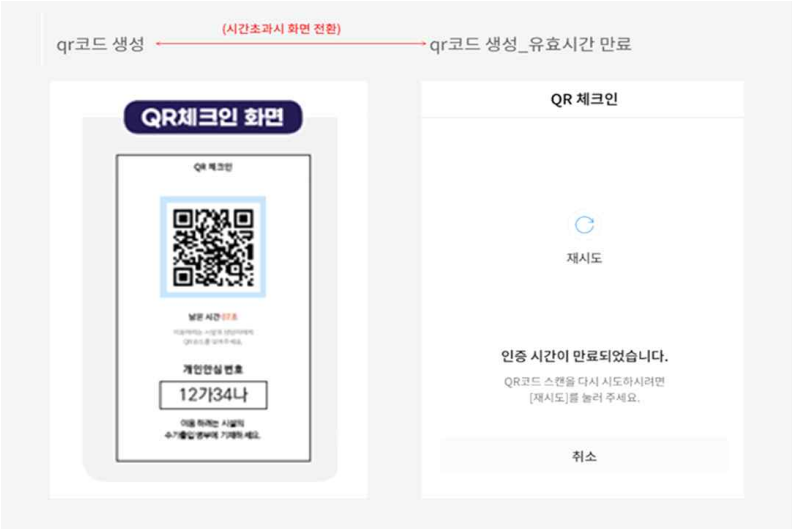

⑥-1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행 완료/개인안심번호 발행 완료
[QR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QR코드 유효시간 초과 안내 화면이 나옴], 최초 3회까지 자동 재생성

⑥-2 재시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

- 시설 출입 시, 다음과 같이 QR코드 생성(이용자) 및 스캔(시설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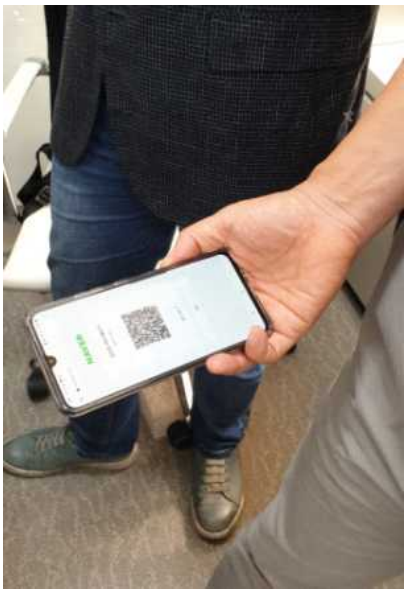

- 정상 인증 시, “인증되었습니다.”라는 음성메시지 송출 및 문구가 화면에 표출됨

2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가. 준비사항

- (필수)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혹은 태블릿PC**), 휴대폰 충전기(혹은 태블릿PC 충전기), 대표자(혹은 방역관리자) 본인 명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 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스캐너가 내장된 PDA 형태(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컴퓨터(PC)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설도 '사업자등록증 없음'을 체크한 후 등록 가능

  – (선택) 거치대*(휴대폰 혹은 태블릿 PC용)

  * 시설 입장 손님이 직접 QR코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QR코드인식용 휴대폰(혹은 태블릿 PC)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아래 그림 참조)

– (미지원 장비) Windows 기반 POS 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치형 2D 레이저 스캐너(QR코드인식 가능)'는 **사용 불가**

나. 필수 환경

- (네트워크 연결 필수) 본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 기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 (핫스팟 기능 활용 가능) 시설 외부에서 입장 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동작하여 QR코드인식용 단말기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절차

-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store),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 앱을 검색하여 기기(안드로이드 4.1 이상 혹은 iOS 11 이상)에 설치하여야 함

---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사용자) 또는 애플 앱스토어(iOS 사용자)에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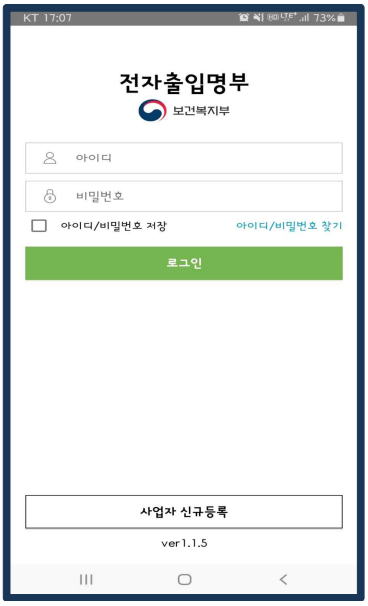

②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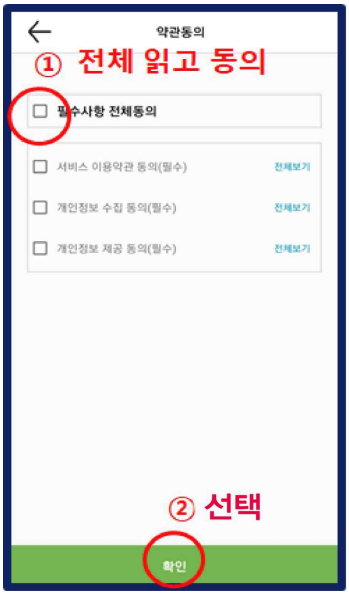

③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 (각 동의에서 '전체보기'를 할 경우, 전체 내용이 화면에 표시)

④-1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경우)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관할 지역,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을 가진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지점 등), 각각의 시설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을 중복하여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로그인 시 화면에 '중복사업자 __건'이라고 뜸)

④-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체크하고, 다른 정보들은 모두 입력하여 가입 (단, 이 경우 지자체 시군구 담당자가 kipass.ssis.or.kr 사이트에서 승인* 처리 후 사용 가능)

* 승인방법: 54쪽 참조

→ 지자체에서 신속 승인 요망

④-3 가입정보 중 업종은 필수 선택

(의무적용시설이 아닌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세부업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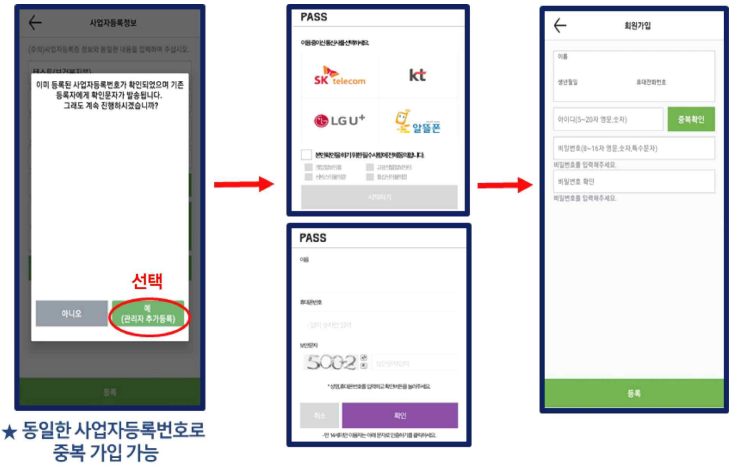

④-4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중복하여 가입할 경우)
확인 창에서 “예(관리자 추가등록)”을 선택

⑤ 관리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

⑥ 관리자가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

⑦ “QR코드 스캔” 버튼 선택 시, 사용 가능

* QR코드 인식창 크기는 사용 OS(안드로이드 또는 애플)에 따라 크기가 다를 수 있음

라. QR코드 스캔 직원 추가등록

- 각 시설의 대표자 등록*(앱 설치, 본인인증 및 회원등록 완료)*이 완료되었을 경우,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직원*(또는 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을 추가 등록 가능함(등록가능 직원수 제한 없음)

  * 출입구가 여럿일 경우, 해당 출입구마다 단말기 설치(거치) 및 방문자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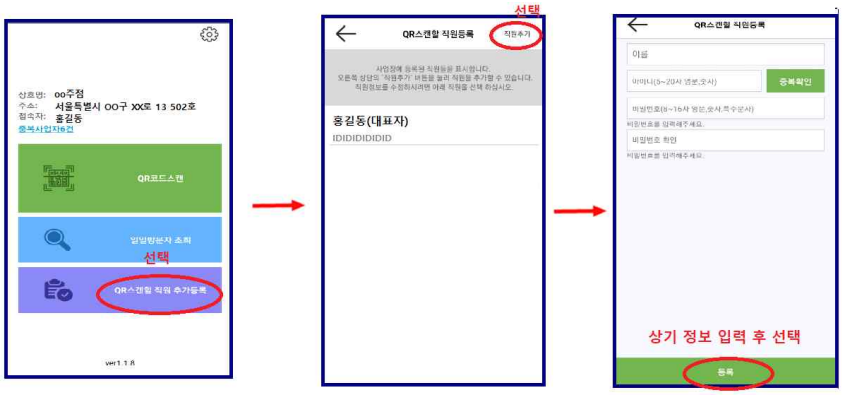

① 메인페이지(로그인 후 첫 번째 화면)에서 “QR스캔할 직원 추가등록” 선택

② 직원등록 페이지가 열리며, 상단 오른쪽의 “직원추가” 아이콘 선택

③ 직원실명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직원 스스로 입력하게 하기보다는 대표자가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 추천)

* 추가 단말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소 별칭(OO입구)으로 사용 가능

④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 절차 완료

마.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라도, 사업장 장소가 분리된 경우(출입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등)에는 각각 사업자(관리자)를 별도 등록하여 관리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가입 가능함
  * 시설에서 중복가입 건을 삭제 요청할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https://kipass.ssis.or.kr에서 삭제 가능

①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는 같은 정보를 입력

② 상세주소만 다르게 입력하여 새로 가입

바. 시설관리자용 앱을 활용한 입장 절차

- 스캔에 사용되는 휴대폰(혹은 태블릿)은 통화가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방전될 수 있으므로,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에 전원을 상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휴대폰(혹은 태블릿)의 전면 카메라 혹은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면카메라 사용시 QR코드는 약 30cm의 간격을 두어 스캔하여야 원활한 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

① 로그인 완료 후 QR코드 스캔 버튼 선택

② 가운데 투명한 부분 내 ③ 줄 부분에 입장객 QR코드 스캔

[스캔이 완료될 경우, '인증되었습니다.' 음성메시지 송출]

Ⅲ 주요 질의 응답(Q&A)

1 일반사항

Q. 전자출입명부는 무엇인가요?

A.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시설(업소) 등에서 수기(手記)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 영문으로는 KI(Korea Internet) Pass, '키-패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의 앱에 스캔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QR코드 발급 관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앱 운용회사와 협력

-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암호화된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이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전자출입명부는 왜 필요한가요?

A.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애로를 겪었던 바 있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제한명령'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 ('20.3.22)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상 인원 4,961명 중 41.0% (2,032명)만 유선 통화 가능

- 또한 기존 수기기재 방식의 명부는 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필기구 등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 반하여,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코드 사용과 이중 보관체계(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내 개인정보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코드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 또한, 수기명부 작성 시 필기구 등에 의한 접촉감염의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시설 내에서의 확진자 노출에 대해, 신속한 검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은 소중한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추가 감염을 막고,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역학조사에 활용되나요?

A.

-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이용자 QR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QR코드 정보와 생성시간만을 저장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는 시설명, 출입시간과 암호화된 QR코드만 저장됩니다.
-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전화번호 혹은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시설명, 일시 등을 특정하여 2개 기관(QR코드 발급회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접촉자 정보를 요청하여 역학조사에 신속 활용하게 됩니다.
  - 역학조사관은 해당 시설의 위험도,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접촉 수준에 따라 자가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 문자 발송 및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Q.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 시설 출입시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QR코드 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음
-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행한 집합제한명령('20.5.8.)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명부작성 제도가 도입됨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없나요?

A.
- 전자출입명부는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이용자 QR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QR코드 정보와 생성시간만을 저장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출입명부에는 시설명, 시간과 암호화된 QR코드만 저장됩니다.
- 전자출입명부와 관련된 이들 정보는 2개 기관에 분산되고 암호화되어 저장됨으로써, 한 기관의 정보만으로는 이용자의 동선 파악 등이 불가능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시에만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만이 이들 두 개 기관에서 분산 보관된 암호화된 정보를 묶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가 끝나고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A.
-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및 '경계' 시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 감염병 위기단계는 총 4개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계'는 지역사회에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이상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관리는 더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부모님의 동의(문자인증 등)하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국민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 사용은 본인 동의만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스마트폰이 없으면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에 비치된 별도 '수기명부'에 기재(신분증 제시 필요)하는 절차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시설 출입에 크게 제한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국내에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QR코드 발급을 위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도 별도 '수기명부'에 기재(신분증 제시 필요)하는 방식으로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전자출입명부 앱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나요?

A.
- 시설관리자 등 전자출입명부를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KI-Pass QR코드 발급에는 불필요)
-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안드로이드 4.1 이상 기기 필요)는 Google Play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iOS 11 이상 기기 필요)는 Apple 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Q. 전자출입명부 관련 자세한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 네이버, Youtube 검색창에서 '전자출입명부'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 코로나19 공식 누리집(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 "전자출입명부"로 검색
    * 홍보자료 & FAQ - 홍보자료 - 일반인 - "전자출입명부"로 검색

2 이용자

Q.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 시설 이용시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로 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의 앱에 스캔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QR코드 발급 관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앱 운용회사와 협력

Q. QR코드 발급은 네이버에서만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네이버 외에도, PASS 및 카카오톡 앱에서 가능합니다.

- 2020년 6월 10일 본 사업 실시일 기준으로는 네이버만 가능했으나, 6월 24일 이후 PASS(통신사 본인 확인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 2020년 7월 1일 이후 카카오톡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이용자 본인이 QR코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예, 고령, 장애 등)에서, 타인이 QR코드 발급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이용자 본인의 사정(예를 들어, 고령 등 전자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 있을 경우, 타인(예를 들어, 가족, 시설관리자 등)이 QR코드 발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권합니다.
  - 단,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 이용자 본인을 동반한 상태에서 네이버 가입, 본인 인증 등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시설 출입 시 QR코드 등록 및 스캔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4주 후 정보가 자동 파기되나요?

A.
-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암호화된 QR코드 및 출입기록 등은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의 두 배 기간인 4주(28일) 동안 저장·관리됩니다.
  - 4주만 서버에 저장되고 이후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며, 각 기관의 정보관리책임자가 본인 책임하에 해당 정보의 자동파기가 정확히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개인정보가 암호화·분리 관리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안전한가요?

A.

- 개인의 시설 출입 등 동선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기 위해 QR코드로 암호화, 특정 기관 내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임의로 풀어 확인하지 못하도록 분산보관하는 시스템 운영정책에 기반하여 설계 관리되고 있습니다.

  * QR코드는 음영으로 구분된 박스 형태의 2차원 코드로서, 사람이 직접 해당 QR코드를 인식,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QR코드 리더 등을 통해 시스템이 인식하는 경우에도 난수로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해킹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질문) QR코드 발급회사는 QR코드를 풀 수 있지 않나요?

  – 네. QR코드 발급회사는 암호화에 사용된 ke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QR코드를 풀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QR코드 발급만 할 뿐, 전자출입명부의 특정 시설 출입사항과 연계하지 못하여 개인의 동선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를 저장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코드 정보와 시설, 출입시간만을 이중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어, 역시 개인의 동선정보 확인은 불가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받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매우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시설 입장시, QR코드가 두 번 이상 스캔되어도 괜찮은가요?

A.
- 네. 두 번 이상 스캔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 동일시설에서 두 번 이상 스캔된 경우에도 접촉자 파악 등을 위한 자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추가질문) 시설에서 나갈 때에도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나요?
  - 입장시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퇴장 시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장 시에도 스캔하시는 것이 방역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스캔을 권합니다.

Q. QR코드를 한 번 발급받아도, 다른 시설 방문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다른 시설 방문 시, 동일한 절차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스캔해야 합니다.
  - 전자출입명부에 활용되는 QR코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한 일회용 QR코드로 발급됩니다. 15초가 지나는 경우 간단히 재발급 버튼만 누르면 새로운 QR코드가 생성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질문) QR코드 최초 발행을 위해서 본인인증을 했었는데, 두 번째 QR코드 발행 시에도 또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최초 QR코드를 발급하기 위해 본인인증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이후 QR코드 발급 시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시설관리자

Q.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 시설관리자의 휴대폰(스마트폰) 혹은 별도의 공기계(WiFi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 및 등록(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여야 합니다.

- 설치가 완료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열고, 로그인 한 후, QR코드 스캔 버튼을 눌러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는 절차로 사용합니다.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확인 불가

Q.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은 무엇인가요?

A.
- 중수본·지자체에서 중점관리시설(11종)* 지정 및 지자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토록 한 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21.2.15. 기준**이며, 향후 행정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적용 대상'(4쪽), 중점관리시설(11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파티룸

  ** 중수본-5184, 5185('21.2.15.)호 '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기준(적용기간: '21.2.15~2.28)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의무시설인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한가요?

A.
- 원칙적으로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통신곤란 시설이나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인 시설 등의 경우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적용 예외 될 수 있습니다.
  - 수기명부는 이용자 중 휴대폰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병행하여 비치·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의무시설인데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원칙적으로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미비치,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적용 대상'(4쪽) 참고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0조제7호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 또는 10만원 이하(이용자)의 과태료를 부과함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전자출입명부 임의시설인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임의시설 또는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의 등록은 상호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실 사용지 주소) 및 방역관리자의 입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시 방역 상, 편의 상 이점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고드립니다.

Q. 시설관리자는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누구도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 다만, 시설관리자는 시간대별로 출입자 통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역학조사관만이 역학조사의 목적에 한하여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의무적용시설은 전자 또는 수기명부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무적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를 비치 후 사용합니다.

-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의 시설 방문 확인 시 별도의 수기명부에 개인정보의 기재 방식(신분증 확인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거부자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수기명부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직원등록 메뉴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A.
- 출입구가 여럿인 시설에서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야 할 경우 직원등록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또는 방역관리자)가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을 다른 개인적 용도(통화, 게임 등)로 이용시, 시설내 직원이 '전자출입명부(KI-Pass)'에 로그인하여 QR코드를 스캔하는 출입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 경우, 어떻게 시설관리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내 접촉자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하는 지점은 별도의 방역관리자를 지정, 별도의 계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었을 경우, 기 등록한 대표자(혹은 방역관리자)에게 신규 등록된 사항을 문자로 송부, 신규 등록된 지점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계없는 시설의 등록 시 문자에 송부된 기술팀에게 통보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입장과 퇴장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 명확한 체류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장과 퇴장으로 나눠 스캔하는 방안도 시스템 설계 시 고려되었으나,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입장, 퇴장을 나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권고) 입장 시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퇴장시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장 시에도 스캔하시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스캔을 권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스캔 시간 등을 분석하여 체류시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 (추가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체류시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확보하는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등과 함께 분석하여 특정 장소의 체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 체류시간을 확인한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를 추정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여 검사요청 문자 등 방역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 전자출입명부 사용 중,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 해당 시설의 방문이 확인된 확진자가 확인되는 경우, 방역당국의 시설 소독명령 등으로 해당 공간이 일시 폐쇄됩니다. 이후 다시 열린 해당 시설은 확진자에 의한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시설 내 직원도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A.
- 시설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직원 포함)은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 시설이용자, 직원 모두 해당 공간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확진자의 방문이 확인된 시설 내 모든 사람은 접촉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외국인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설에 어떻게 입장하나요?

A.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은 시설 방문시 별도의 수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신분증 확인 포함)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위한 태블릿, 데이터 비용 지원은 안되나요?

A.
-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집합제한명령 등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혹은 임의 설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의 설치·운영은 시설 내 방역조치(손소독제 비치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전자출입명부 앱 사용이 가능한 운영환경은 무엇인가요?

A.
- 최근 3~4년 내 구입한 스마트폰(혹은 태블릿PC)은 전자출입명부 앱의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안드로이드 4.1 이상 혹은 iOS 11 이상을 지원해야 함

  - 또한, 오토포커스(Auto-focus)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QR코드 인식률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시설 내 와이파이(Wi-Fi)가 꼭 연결되어야 하나요?

A.

- 꼭 와이파이(Wi-Fi)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LTE 등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설내 설치된 WiFi와 연결을 권고합니다.
  - QR코드 인식용 휴대폰 또는 테블릿 PC(전자출입명부 앱이 설치된 단말기) 자체에서 LTE 혹은 5G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핫스팟 기능 활용 가능) 시설 외부에서 입장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시설 내 별도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울 경우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동작하여 QR코드인식용 단말기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스피드게이트 등 다른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자출입명부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A.

- 스피드게이트의 운영 서버에 개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출입일시)가 4주 이상 저장되고, 방역당국에 즉각 제출할 수 있을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전자출입명부 적용 예외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의 경우 즉각적인 접촉자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가급적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을 권합니다.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전자출입명부 앱 사용시 QR코드 인식율이 떨어져, 이용자 입장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개선책이 있나요?

A.
- 가급적 후면 카메라의 이용을 권고합니다.
  - 대부분의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에 내장된 auto-focus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인식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uto-focus로 조정되는 시간을 줄이면(고정된 거치대와 특정 거리(20~30cm)로 떨어진 곳에 휴대폰 받침대를 놓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 인식율이 높아집니다.

Q. 이벤트 업체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 특정 행사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업체의 경우 해당 이벤트별 별도 계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본인의 휴대폰 이외에 별도의 장비 없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용자들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용자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비치된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방식(신분증 제시 포함)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 또는 수기명부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질문)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수기명부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미성년자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수기명부에 작성 가능합니다.

Q. 전자출입명부 앱을 컴퓨터(노트북 등)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 국민 대부분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설계·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별도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의 개발 및 지원으로 진행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시급한 방역조치의 하나로 네트워크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별도 단말기, 스캔 장비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앱 실행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지자체 담당자

Q.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A. • 각 광역(시도)지자체에서 업무책임자가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kipass.ssis.or.kr)에 회원등록 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공문으로 승인요청, 각 기초(시군구)지자체에서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회원등록 후, 광역(시도)지자체가 승인한 후 관할지역 내 시설에 대한 관리 가능합니다.

* 관내 등록업소, 운영사항(일자별 출입인원수 등) 확인 가능함. 지자체 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서 의무·임의 시설 등을 구분해 설정 가능하며, 잘못된 정보를 수정·삭제 가능함

Q. 불가피한 사유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어떻게 하죠?

A. • 중점관리시설 등 의무적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의 예외가 됩니다.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한정하며,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Ⅲ 주요 질의 응답(Q&A)

Q. 전자출입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에 한정하며,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정보 제출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 대체적인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인증은 반드시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Q. PC방은 의무적용시설입니까?

A. • 중수본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에 대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시행*,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2('21.01.0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21.01.0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참고

Q. 교회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입니까?

A. • 현재 교회는 의무적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의무적용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2('21.01.02)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21.01.02)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참고

Q. 일회성 행사인데 코로나19 감염이 염려되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 행사 주최 측에서 주최 측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별도의 장비 없이,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자출입명부상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요?

A. • 방대본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내 전자출입명부시스템(KI-Pass) 연계에 따라, 시·군·구→시·도에 요청, 시·도에서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시설 출입이력을 요청하여 확인이 가능('20.7.1.~) 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5634('20.6.30.)호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전자출입명부) 지자체 활용안내' 공문 참고

Q.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개인안심번호의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요?

A. • 시·군·구→시·도에 요청, 시·도에서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내 정보제공요청서→개인안심번호에서 조회가 가능('21.2.19~)합니다.

1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kipass.ssis.or.kr) 개요

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 기관 확인·안내 및 관리, 필요시 현장점검
- 유흥업소 등 적용대상기관에 전자출입명부 활용 방식 교육·지침 하달

나. 권한 관리

- 권한관리체계는 시스템* 관리자(방대본), 시·도 업무책임자, 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로 구성
  - (시·도, 시·군·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 공무원

권한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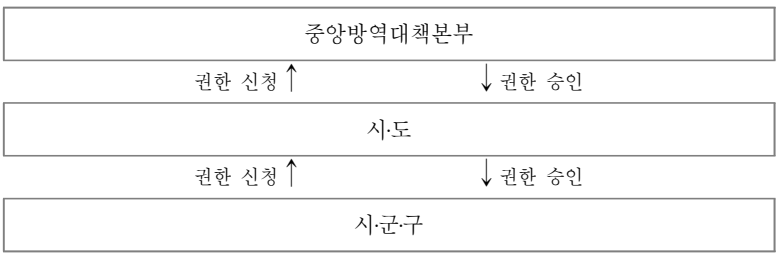

※ 권한 관리: 중수본(보건복지부)→방대본(질병관리청)으로 이관('21.1.1)

* 시·도 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 ID를 등록(회원가입) 후, **[서식 2-1]**의 '권한신청서(시·도 업무책임자용)'를 작성 및 스캔(pdf)하여 방대본으로 공문 송부

* 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 **[서식 2-2]**의 '권한신청서(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용)'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송부하고, 시·도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 방대본에서는 시·도 담당자에 대한 권한신청 요청 건을 승인

다. 권한 변경 및 중지

- 권한을 부여받은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기부여 받은 권한을 종료 처리하여야 함

  * 시·도 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의 권한 반납시 **[서식 2-1]** '권한반납신청서(시·도 업무책임자용)'를 작성 및 스캔(pdf)하여 방대본으로 공문 송부

- 시·도 업무담당자는 퇴직,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해당 시·군·구 업무담당자가 더 이상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중지 처리를 해야 함

  * 3개월 미사용자는 권한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재사용 원할 시 재승인 필요

  *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의 권한 반납시 **[서식 2-2]** '권한반납신청서(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용)'를 작성 및 스캔(pdf)하여 시·도로 공문 송부하고, 시·도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라. 시스템 사용방법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사용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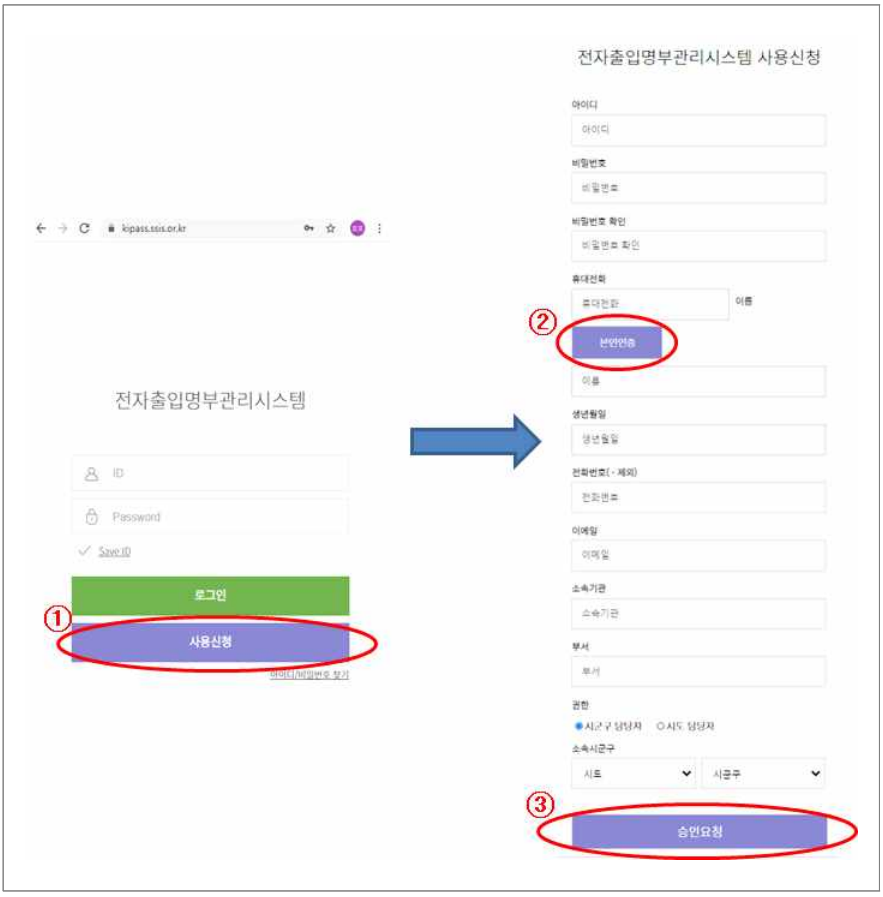

① https://kipass.ssis.or.kr 사이트 접속 후 사용신청 클릭

②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신청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③ 승인요청 후 권한신청서를 작성 및 스캔하여 방대본으로 공문 송부

※ 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 **[서식 2-2]**의 '권한신청서(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용)'를 작성하여 시·도 업무책임자에게 승인 요청

● 사업자 조회

① 검색조건(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시설 구분, 상태 선택 및 입력

② 입력한 검색조건으로 사업자 정보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③ 돋보기 버튼 클릭 시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조회

④ 수정 버튼 클릭 시 사업자 정보 수정화면으로 이동

※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선택안함”으로 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및 정상가입 확인 후 “임의시설” 또는 “의무시설”로 변경(수정)

● 출입이력 조회

① 검색조건 입력 (시도, 시군구, 일시, 상호명)

② 입력된 검색조건으로 출입 이력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사용자 관리

① 검색조건 입력 (시도, 시군구, 이름)
② 입력된 검색조건으로 출입이력 조회
③ 승인 또는 반려 할 사용 체크박스로 선택
④ 체크박스로 선택된 사용자 승인 및 반려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연계 안내

● 방대본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 내 전자출입명부시스템(KI-Pass) 연계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시설 출입이력 확인이 가능('20.7.1.~)

* 중앙방역대책본부-5634('20.6.30.)호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전자출입명부) 지자체 활용안내' 공문 참고

※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에서 발급한 QR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가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음

마.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조회 사용방법

-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

① 정보제공요청 -> 개인안심번호
② 안심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③ 전화번호 확인
④ 정보 확인

[서식 2-1] 전자출입명부 지자체 관리자 권한등록 및 반납신청서 (시·도 업무책임자용)

<table>
<tr><td colspan="4">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권한 (□ 신청 □ 반납)서</td></tr>
<tr><td rowspan="6">권한부여
신청자</td><td>소속기관</td><td colspan="2"></td></tr>
<tr><td>부서</td><td colspan="2"></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r>
<tr><td>등록 ID</td><td colspan="2"># 관리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기입
(https://kipass.ssis.or.kr/)</td></tr>
<tr><td>전화번호</td><td>핸드폰 번호</td><td></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2"># 가급적 korea 메일로 기입</td></tr>
<tr><td colspan="4">위 권한 부여 신청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76조의 2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 권한(등록시설 조회 등)을 신청하며, 신청자 및 신청기관은 역학조사 외 다른 목적의 사용 및 누출에 의한 피해 시 법적 책임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０００(서명)
기관장 ０００(직인, 공문제출시 직인날인 생략 가능)

20 .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귀하</td></tr>
</table>

[서식 2-1] 전자출입명부 지자체 관리자 권한등록 및 반납신청서 (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용)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권한 (□ 신청 □ 반납)서				
권한부여 신청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등록 ID	# 관리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기입 (https://kipass.ssis.or.kr/)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 가급적 korea 메일로 기입		

위 권한 부여 신청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76조의 2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 권한(등록시설 조회 등)을 신청하며, 신청자 및 신청기관은 역학조사 외 다른 목적의 사용 및 누출에 의한 피해 시 법적 책임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０００(서명)

기관장 ０００(직인, 공문제출시 직인날인 생략 가능)

20 . .

○○○ 시장·도지사 귀하

1 전단지(리플릿)

<시설 관리자>
보건복지부
1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등록, 지원 추가 등록 가능
Google Play(안드로이드)
App Store(iOS)
KI-Pass
전자출입명부(KI-Pass) 검색 및 설치
2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태블릿 PC 등)로 가능
이용자
스캔
시설관리자
※ 전자출입명부(KI-PASS)의 개인정보는 역학조사시에만 활용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6월 10일 시행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시 한시적 운영

<이용자>
보건복지부
※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중 편하신 방법으로 QR코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① '#' 선택
② '코로나19' 선택
③ 'QR체크인' 선택
네이버
① '' 선택
② 'QR체크인' 선택
PASS
SKT
KT
LG
'QR출입증' 선택
QR코드 발급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QR코드는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 시 15초만 효력 유지

2 카드 뉴스

보건복지부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6월 10일 시행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시 한시적 운영
이용자는 개인별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 가능합니다.
<이용자 QR 인식절차>
(QR코드 발급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용자
시설관리자
개인정보 확인
QR 코드 생성
암호화된 1회용 QR 코드
이용자의 QR 코드 인식
QR코드 인식 기록
↔
개인정보간 정보 매칭
방역당국 요청 시 정보 매칭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가능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 문의전화 133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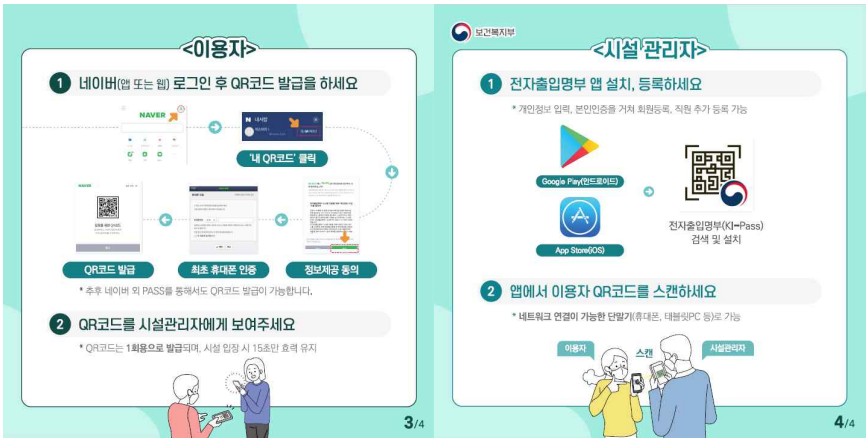
<이용자>
1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NAVER
'내 QR코드' 클릭
QR코드 발급
최초 휴대폰 인증
정보제공 동의
* 추후 네이버 외 PASS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QR코드는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 시 15초만 효력 유지
3/4
보건복지부
<시설 관리자>
1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등록, 직원 추가 등록 가능
Google Play(안드로이드)
App Store(iOS)
전자출입명부(KI-Pass)
검색 및 설치
2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태블릿PC 등)로 가능
이용자
스캔
시설관리자
4/4

3 포스터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방문 절차>
1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로그인 후 QR코드를 발급하세요
1. 네이버
2. 카카오톡
3. PASS
NAVER
① '' 선택
② 'QR체크인' 선택
③ '' 선택
④ '코로나19' 선택
⑤ 'QR체크인' 선택
SKT
KT
LG
PASS
'QR출입증' 선택
QR코드 발급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이용자
스캔
시설관리자
※ 전자출입명부(KI-PASS)의 개인정보는
역학조사시에만 활용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문의전화
1339

수기명부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해도 되나요?
전자출입명부 대표자 한 명만 QR코드 찍어도 되나요?

홍길동 외 1명, 안 돼요~!

의무적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전원 모두 각각 한 명씩

수기명부 작성 또는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4 홍보자료(전단지,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주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접속 → '홍보자료 & FAQ' 선택 → '홍보자료' 선택 → '전자출입명부' 검색

5 안내 동영상 주소

- 4분 45초(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렇게 활용해요!_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 7분 39초(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침해? 직접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btrO5hbvy4

- 36초(QR코드 전자출입명부, 직접 적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H_S18y8Ekhg